

문서번호	주민생활지원과-105417	주무관	희망복지지원1팀장	주민생활지원과장	주민생활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결재일자	2015. 12. 22.	탁명선	권태형	김호식	김희동	하철승	12/22 박경수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협 조					
보도여부							

## 2015년 강북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결과 보고

2015. 12. 21.

강 북 구  
(주민생활지원과)

# **2015년 강북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결과 보고**

## **[심의 개요]**

- 일시/장소:** 2015. 12. 14.(월) / 기획상황실(3층)
- 참석 위원:** 16명(진행: 권순직 공동위원장)
- 심의 안건:** 총9건(교육지원과 1건, 생활보장과 8건) 상정
  - 2015년 꿈나래통장사업 추천대상자 선정(안) 사후승인
  - 2016년도 기초생활자활기금 운용계획(안) 사후심의
  - 2015년도 기초생활자활기금 성과분석 보고서(안) 사후심의
  - 2014년 기초생활자활기금 결산 수정보고(안) 사후심의
  - 2015년 강북구 자활지원계획(안) 사후심의
  - 2015년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대상가구 선정(안) 사후심의
  - 201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면접대상자 선정(안) 사후심의
  - 2015년도 희망플러스통장 면접대상자 선정(안) 사후심의
  - 국민기초생활 보장비용 징수·징수제외 및 가족관계 단절(안) 사후심의

## **[심의 결과]**

### **I. 2015년도 꿈나래통장사업 추천대상자 선정(안) 사후심의**

#### **관련 근거 및 심사기준**

- 근거: 『희망플러스·꿈나래통장 재설계 추진계획』
- 기준: 서류심사 총 100점(시 거주기간, 가족수 등)
- 사전심의 결과
  - 신청자: 14명
  - 심의대상자: 10명
  - 제외자(자격미충족): 4명
  - 추천인원: 10명

#### **심의 결과: 원안대로 의결**

## II. 2016년도 기초생활자활기금 운용계획(안) 사후심의

### □ 관련 근거 및 운용계획

- 근거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, 제26조의5,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- 기금조성 계획

(단위: 천원)

2015년도 말 조성액 <sup>㉔</sup>	2016년도 조성계획			2016년도 말 조성액 <sup>㉕</sup> = <sup>㉔</sup> + <sup>㉖</sup>	비 고
	수 입 <sup>㉖</sup>	지 출 <sup>㉗</sup>	증 감 <sup>㉘</sup> = <sup>㉖</sup> - <sup>㉗</sup>		
728,514	22,052	0	22,052	750,566	

### □ 심의 결과 : 원안대로 의결

## III. 2015년도 기초생활자활기금 성과분석 보고서(안) 사후심의

### □ 관련 근거 및 기금운용 현황

- 근거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, 제26조의7,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- 기금운용 현황 및 계획

(단위: 백만원)

'14년도 운용현황		'14년말 조성액	'15년 운용계획			비 고
수입	지출		수입	지출	증감	
71	40	723	49	0	49	

- 총 평
  - 그 동안 적립해 온 기초생활자활기금으로 강북지역자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자활지원사업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.
  - 기초생활자활기금의 재원인 자활사업 수익금과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어 지속적인 자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자활기금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.

### □ 심의 결과 : 원안대로 의결

#### IV. 2014년 기초생활자활기금 결산 수정보고(안) 사후심의

**관련 근거 및 결산내역**

- 근거: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,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- 2014년도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결산내역

(단위: 원)

구분 기금명	전년도말조성액 ㉠	당 해 연 도 증 감 액			당해연도말조성액 ㉡=㉠+㉢
		계 ㉢=㉣-㉤	조 성 액 ㉣	사 용 액 ㉤	
계	652,643,560	31,136,296	71,136,296	40,000,000	683,779,856
기초생활 자활기금	652,643,560	31,136,296	71,136,296	40,000,000	683,779,856

**심의 결과: 원안대로 의결**

#### V. 2015년 강북구 자활지원계획(안) 사후심의

**관련 근거 및 추진개요**

- 근거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, 제28조
- 사업내역: 총 1,075명(자활근로사업 784명, 취업지원사업 2개사업 291명)
- 사업예산: 3,737,957천원

**심의 결과: 원안대로 의결**

#### VI. 2015년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대상가구 선정(안) 사후심의

**관련 근거 및 심사기준**

- 근거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, 제15조
- 기준: 신청가구를 현장방문하여 주택 상태조사
- 사전심의결과
  - : 신청가구(24가구) → 선정가구(19가구) → 제외가구(5가구)
  - ※ 제외가구 사유 : 본인거부 3가구, 재건축 1가구, 병원입원 1가구

**심의 결과: 원안대로 의결**

## VII. 201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면접대상자 선정(안) 사후심의

### 관련 근거 및 심사기준

- 근거: 『희망두배 청년통장』 저소득 근로청년 자립지원 계획
- 기준: 서류심사 총 100점(시 거주기간, 가족수 등)
- 사전심의결과  
: 신청가구(45가구) → 선정가구(42가구) → 신청부적격가구(3가구)

### 심의 결과: 원안대로 의결

## VIII. 2015년도 희망플러스통장 면접대상자 선정(안) 사후심의

### 관련 근거 및 심사기준

- 근거: 『희망플러스·꿈나래통장 재설계 추진계획』
- 기준: 서류심사 총 100점(시 거주기간, 가족수 등)
- 사전심의 결과
  - 신청자: 14명
  - 심의대상자: 14명
  - 추천인원: 11명

### 심의 결과 : 원안대로 의결

## IX. 국민기초생활 보장비용 징수징수제외 및 가족관계 단절(안) 사후심의

### 관련 근거 및 심사기준

- 근거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, 제46조, 동법시행령 제29조, 제41조
- 기준: 수급자의 실태조사 등을 고려하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수결정
- 심의대상: 총 166가구 252명/ 175,922,737원
  -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제외: 143가구 228명/ 165,276,427원
  -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: 2가구 3명/ 2,631,960원
  -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제외: 5가구 5명/ 8,014,350원
  - 보장가구 제외(사실이혼 인정): 8가구 8명
  - 조건부과 제외: 8가구 8명

### 심의 결과: 원안대로 의결

- 붙임 1. 회의록 1부.  
2. 심의의결서 1부.  
3. 대표협의회 위원 명단 1부. 끝.